

2020. 5. 11. 보도 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5월 14일 공개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5. 14.(목) 14: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제청법원/ 제청신청인 (대리인)	이해관계인 (대리인)	비 고
1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허○○ 외 1 (곽병훈 외 2)	보건복지부장관 (정부법무공단)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보 도 자 료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 제한에 관한 사건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공 개 변 론]

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14일(목) 14:00 대심판정에서, 2017. 11. 9. 접수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안경업소의 개설 주체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과 법인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안경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0. 5. 11.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이하 ‘위헌제청신청인’이라 한다) ① 주식회사 ○○(이하 ‘주 ○○’이라 한다)는 안경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경사 허◆◆, 안경사 이△△ 2인과 주식회사 □□가 주주이며(위헌제청신청시에는 사모펀드 주식회사가 주주로 있었다), ② 피고인인 위헌제청신청인 허◆◆는 (주) ○○의 대표이사이다.
-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 피고인들은 안경사 면허 없는 법인인 (주) ○○의 직영점인 안경업소 9개소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허◆◆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주) ○○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6고단5236 판결).
- 위헌제청신청인들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하 ‘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위헌제청신청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나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17. 10. 31.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732)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이하 둘을 통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眼鏡業所”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 위헌제청신청인 주장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안경사 면허제도를 둔 취지를 안경업소 개설주체에 대한 규제이유와 혼동한 나머지, 타 전문직 법인과 달리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안경사 개인의 법인 안경업소 개설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해관계인 보건복지부장관 의견 요지

- 국내 안경업계의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고 소비자들은 이미 해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할 경우 국민 눈 건강과 소비자 후생에 끼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안경사는 의사, 약사, 의약품 제조업자, 변호사 등 타 직종과의 업무특성, 여건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과 달리 법인에 의한 업무수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사의 자유는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 주요 쟁점

-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제청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 참고인 의견요지

- 참고인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광현(위헌제청신청인 측)
대한안경사협회 윤리이사 안경사 윤일영(이해관계인 측)

○ 참고인 정광현의 의견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므로, 법인에게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하면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 결과도 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관에게 확신을 심어 줄 정도의 주장·입증 책임을 짐
-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존 안경사의 기득권 보호는 경쟁의 자유를 내포하는 직업의 자유 이념을 훼손하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 창의 존중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배치됨
- 헌법 제119조 제2항, 제123조 제2항, 제123조 제3항은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기술적 지원으로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이지, 타방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일방에게 경쟁의 부담을 덜어주는 특혜를 베푸라는 취지는 아님
- 직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똑같이 갖추었는데 한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고, 다른 집단에 대한 진입장벽 설정 및 형벌까지 동원하여 취업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임

○ 참고인 윤일영의 의견요지

- 안경사 업무는 시력검사, 안경렌즈 조제가공을 위한 장비를 사용하여 눈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임
- 안경사의 업무특성상 약사보다는 의사에 가까우므로, 법인약국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바84)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을 참고해야 함
- 조합형, 오너형 병원은 잘못된 진단이나 처방, 의료장비 문제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그 구성원에 불과한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음

- 안경업소 개설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경사의 업무는 자본논리에 종속될 것이고 안보전서비스 시스템 붕괴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것임
- 안경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는 안경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보장해야 함
- 영세안경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화, 대형화된 안경원의 진입으로 인한 소규모 안경원 폐업을 방지하여야 함